

청렴10계명



1. 근무 중 불필요한 행위 금지
근무중에 주식을 하거나 음란물을 시청하는 행위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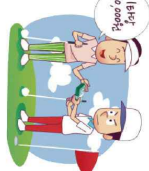


10. 과도한 음주 및 음주운전 금지
인생을 망치는 음주운전 절대 금지

2. 경조사 통지 및 경조사비 수수 금지
친족이 아닌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 통지 행위 금지



9. 도박·경마 등 사행성 오락 행위 금지
화투, 경마, 내기 골프 등 불법 도박행위 금지



3. 금품 향응 등의 수수 금지
골프장, 콘도 등을 예약해주는 것도 금품 향응 수수에 해당



8. 부정 청탁 및 알선 행위 금지
불법행위를 부탁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금지

4. 공용물의 사적 사용 금지
범인카드 또는 공용차량을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행위 금지



7. 직위를 이용한 부담이득 행위 금지
직위를 이용해 건설업체로부터 분양권 등을 받는 행위 금지

5. 직무관련자만 금품 거래 금지
공사관계자에게 돈을 빌리는 행위 금지



6. 비공개 정보 유출 금지
내부정보를 이메일 등을 통해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 금지

청탁금지법 10계명



- 누구에게나 할 수 없는 부탁은 들어주지도 하지도 말라.
- 금품을 수수하면 공적인 공직생활 허물이침에 무너진다.
- 세상에 타나지 않는 공짜는 없다. 공짜를 멀리하라.
- 반물까 말까 고민되면 받지 말라.
- 신고할까 말까 고민되면 신고하라.
- 점심식사는 동료와, 저녁식사는 가족과 함께하라.
- 내가 먹은 음식, 내가 계산하라.
- 배우자는 남이 아니다. 배우자의 금품 등의 수수도 신고하라.
- 나의 경조사를 직무관련자에게 알리지 말라.
- 모든 외부활동은 무조건 먼저 신고하라.

부패행위 신고내선



- 「신고대상」**
-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에 따라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행위 등
- 「신고방법」**
- 온라인신고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응답소(민원신고) > 민원신청 > 원순세에게 바란다
 - 우편 / 방문신고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5동 2층(감사위원회)
 - 팩스신고 : 02-2133-1306~7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20 / 02-2133-4800(서울특별시 조사담당관)
 - ※ 모든 신고는 기명문서로 해야 하므로 전화로는 상담만 가능

하도급 부조리 신고내선



- 「신고대상」**
- 서울시 관공사의 불법·불공정하도급, 하도급대금 미지급, 장비·자재 대금 미지급, 임금체불 등
 - 서울시 관할구역 내 민간 건설공사의 불법·불공정 하도급, 하도급대금 및 장비·자재 대금 지급의무위반 등
 - ※ 민간공사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1350) 신고사항
- 「신고방법」**
- 온라인신고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응답소(민원신고) > 민원신청 > 하도급 부조리 신고
 - 우편 / 방문신고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5동 3층(안전감사담당영관)
 - 팩스신고 : 02-2133-1302 · 유선신고 : 02-2133-3600